

8.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제2-가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절
원산지 규정**

**제2가.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식이란 정기적인 방류, 급식 또는 천적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 수생 무척추동물(연체동물과 갑각류를 포함한다) 및 수생식물을 포함한 수생생물을 알, 치어, 작은 물고기, 유생동물, 파(parr), 스몰트(smolts), 또는 그 밖의 후기자어기에 있는 덜 자란 물고기와 같은 종자(비당사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대체가능 재료**란 원산지 결정과 관련 없는 외관의 사소한 차이와 관계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컨센서스로 인정되거나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받는 그러한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적용을 위한 폭넓은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양 당사국이 각국의 국내법에서 채택하여 시행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규칙 및 법적 주석을 말한다.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않는 재료, 또는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의 운영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연료, 에너지, 촉매제 및 용제

나.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라. 도구, 형판 및 주형

마.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바.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그리고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어 그 생산의 일부가 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재료

재료란 부품 또는 원료를 포함하여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상품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란 이 장에 따른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란 운송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용으로 포장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생산자란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경작, 사육, 채굴, 수확, 어로, 딛사냥, 수렵, 포획, 수집, 번식, 추출, 양식, 채집, 제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공정을 말한다.

재생재료란 다음의 결과로 나온 하나 이상의 개별 부품 형태의 재료를 말한다.

- 가. 중고 상품을 개별 부품으로 해체, 그리고
- 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러한 부품에 대한 세척, 검사, 시험 또는 그 밖의 공정, 그리고

재제조 상품이란 다음의 상품을 말한다.

- 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재생재료로 구성된 상품
- 나. 동등한 상품이 신상품일 때와 비교하여 유사한 성능을 지닌 상품, 그리고
- 다. 동등한 상품이 신상품일 때 적용 가능한 보증과 유사한 보증을 지닌 상품

제2가.2조 원산지 기준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상품이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 가. 제2가.3조에 따라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나.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또는
- 다.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

산된 상품. 다만, 그 상품은 부속서 2가-가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각각의 경우, 그 상품은 이 장의 모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2가.3조 완전하게 획득

1. 각 당사국은 제2가.2조의 목적상, 다음의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으로 여겨지도록 규정한다.

- 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 광물성 생산품 또는 그 밖의 무생물 천연자원
- 나.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 경작,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 식물성 상품 또는 균류
- 다.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
- 라.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도살된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마.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¹
- 바. 당사국의 영해의 외측한계를 넘지 않는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 뺏사냥, 어로 또는 양식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 사. 국제법에 따라, 각 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당사국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당사국으로 수입된 젖소와 어린 암소로부터 획득된 상품을 포함한다.

의 선박에 의하여 채취된 어류, 패류 또는 그 밖의 해양 생물

아. 사호에 언급된 상품으로부터 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되거나 추출된 광물, 광물성 생산품 및 그 밖의 무생물 천연자원. 다만, 그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은 그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차. 다음의 상품

1)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생산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또는 부스러기, 또는

2)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또는 부스러기.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카. 가호부터 자호까지에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2. ‘당사국의 선박’ 및 ‘당사국의 가공선박’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선박과 가공선박에만 적용된다.

가. 그 당사국에 등록된 것

나.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는 것, 그리고

다.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

1) 그 당사국의 국민에 의하여 적어도 50퍼센트가 소유되는 경우, 또는

2) 다음의 회사에 의하여 소유되는 경우

가) 그 본점과 주영업소가 그 당사국에 있는 회사, 그리고

나) 그 당사국, 그 당사국의 공공기관, 또는 그 당사국의 국민에 의하여 적어도 50퍼센트가 소유되는 회사

제2가.4조

역내가치포함비율

부속서 2가-가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명시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산정도록 규정한다.

가. 공제법: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상품의 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상품의 가격}} \times 100$$

나. 집적법: 원산지 재료의 가치, 생산비용 및 이윤을 기초로 한 방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 + \text{직접노무비} + \text{직접경비} + \text{이윤}}{\text{상품의 가격}} \times 100$$

다. 원산지재료법: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상품의 가격}} \times 100$$

각각의 경우에,

직접노무비는 임금, 보수 및 그 밖의 피고용인 수당을 포함한다.

직접경비는 총 간접비용이다.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은 백분율로 표시된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다.

상품의 가격은 제2가.6조에 따라 계산된 상품의 가격이다.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제2가.7조, 제2가.8조 및 제2가.9조에 따라 결정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를 포함한다)의 가치이다. 그리고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제2가.7조, 제2가.8조 및 제2가.10조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제2가.5조

최소 공정

1. 제2가.2조다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에서의 상품의 생산이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수행된 다음의 공정 중 하나 이상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생산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다.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 사.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성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 자.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로의 단순한 배치, 카드 또는 판 위에 고정,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생산품 또는 생산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생산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당류의 혼합
-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생산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거. 시험 또는 측정
- 너. 가호부터 거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또는
- 더. 동물의 도살

2. 제1항의 목적상, **단순한**이란 특별한 기술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도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

은 화학반응²이나 혼합 및 배합³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2가.6조 상품의 가격

1. 이 장의 목적상, 그리고 제2항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상품의 가격이 다음 중 하나가 되도록 규정한다.

가. 최종 생산이 수행된 장소에서 상품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 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와 그 상품의 생산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는

나. 상품이 지정된 수출항에서 운송선에 적재될 때, 상품의 비용 및 운송선에 상품을 적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 또는

다.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항 또는 수입지까지의 상품의 국제 수송에 수반되는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WTO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 가격

2.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이 수출될 때 환급 또는 면제되거나 환급 또는 면제될 수 있는 모든 내국세를 제외한다.

² 이 조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은 화학반응이 아니다.

-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³ 이 조의 목적상, **혼합 및 배합**이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및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으로 희석제의 첨가는 제외되며,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제2가.7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비원산지 재료가 추가 생산을 거쳐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재료는 후속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때 그 재료가 그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재료로 취급된다.
- 나.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다음은 생산된 상품이 역내가 치포함비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원산지 포함비율로 계산될 수 있다.
 - 1)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수행된 그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가공의 가치, 그리고
 - 2)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수행된 그 비원산지 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산지 재료의 가치

제2가.8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가치

이 장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재료의 가치가 다음과 같도록 규정한다.

- 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수입된 재료의 경우, 수입지까지의 재료 운송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여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 당사국으로의 수입 시 그 재료의 관세가격
- 나. 상품이 생산된 영역에서 획득된 재료의 경우,

- 1) 생산자가 소재한 당사국의 생산자에 의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
- 2) 가호의 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결정된 가격, 또는
- 3)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최초로 확인 가능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

다. 자가생산된 재료의 경우,

- 1) 일반 경비를 포함하여 그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그리고
- 2)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가격이 결정되는 자가생산된 재료와 동일한 부류 또는 종류인 상품의 판매에서 보통 반영되는 이윤과 동일한 금액

제2가.9조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대한 조정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비용 또는 경비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로부터 또는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의 가치로부터 공제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상품의 생산지에서 그 상품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나.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되었거나, 환급되었거나, 환급 가능하거나, 달리 회수 가능한 관세 및 조세 외의 것으로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그리고

다. 상품의 생산에서 그 재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손상물의 비용에

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2. 제1항에 열거된 비용 또는 경비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조정 금액에 대한 증거 서류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 특정 비용에 대한 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가.10조

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대한 조정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비용 또는 경비가 제2가.8조에 따라 이미 포함되지 않은 한도에서 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추가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상품의 생산지에서 그 상품 생산자의 소재지로 그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나.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되었거나, 환급되었거나, 환급 가능하거나, 달리 회수 가능한 관세 및 조세 외의 것으로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 및 통관 중개수수료, 그리고

다. 상품의 생산에서 그 재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손상물의 비용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2. 제1항에 열거된 비용 또는 경비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조정 금액에 대한 증거 서류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그 특정 비용에 대한 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가.11조

재생 및 재제조 상품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가. 재생재료는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에서 재제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재제조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재료로 취급된다.

나. 재제조 상품은 제2가.2조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다. 어느 한쪽 당사국에서 재제조 상품에 결합되지 않은 재생재료는 제2가.2조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재료이다.

제2가.12조

누적

1. 각 당사국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다만, 그 상품은 제2가.2조의 요건과 이 장의 모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상품 또는 재료가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로 여겨지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생산은, 그 생산이 그 재료 자체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에 충분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그 상품의 원산지 포함비율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2가.13조

허용치

1. 각 당사국은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 요건 또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특정 재료는 그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가-가에 명시된 대로 완전하게 획득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원산지 재료를 포함하는 제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1류부터 제49류까지 그리고 제64류부터 제97류까지의 상품의 경우,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상품의 경우,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가격 또는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각각의 경우, 그 제품은 이 장의 모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상품이 또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모든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3. 이 조는 제2가.3조에 규정된 대로 전적으로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가.14조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1. 각 당사국은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다음에 기초하여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취급되도록 규정한다.

가.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의 물리적 분리, 또는

나. 제2항을 조건으로,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혼합된 경우 생산이 수행되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모든 재고관리기법의

사용. 다만, 선택된 재고관리기법은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 동안 사용되어야 한다.

2. 재고관리기법은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었다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았을 상품 또는 재료보다 더 많은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2가.15조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 또는 그 밖의 안내서가

가. 상품과 함께 분류되고 인도되지만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인 경우

각 당사국은 그러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 또는 그 밖의 안내서가 상품이 부속서 2가-가의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계산하는 목적을 제외하고 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제2가.16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각 당사국은 상품의 소매용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이 부속서 2가-가의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계산하는 목적을 제외하고 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제2가.17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각 당사국은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제2가.18조

간접재료

각 당사국은 간접재료는 그것이 생산된 장소에 관계없이 원산지 재료로 여겨지도록 규정한다.

제2가.19조

세트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을 적용한 결과로 분류된 세트의 경우, 그 세트는 다음의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이다.

가. 그 세트의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또는

나. 그 세트의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격이 그 세트의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제1항의 목적상, 그 세트의 비원산지 상품의 가격은 제2가.4조에 정의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고, 그 세트의 가격은 제2가.6조에 따른 상품의 가격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다.

제2가.20조

비조작

1. 각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된 원산지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비당사국을 통하여 운송되었거나 비당사국에 보관된 원산지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그 상품은

가. 하역, 재선적, 분리, 화물로부터의 해체, 보관, 수입국에 의하여 요구되는 라벨링 또는 마킹,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공정 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비당사국의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3.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제2항의 준수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비당사국의 통관 서류 또는 그 밖의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제3항에 언급된 적절한 서류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요청할 수 있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복합 또는 결합운송 서류, 그 상품에 대한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재무기록, 비조작 증명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같은 상업선적 서류나 화물운송 서류를 포함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예를 들어 전시회에서의 진열 후와 같이 한쪽 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이 재반입되는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다음 사항이 그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가. 재반입되는 상품이 수출 시와 동일할 것, 그리고

나. 재반입되는 상품이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았을 것

제2가.21조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제2가.2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은 한국에서 수출되고 그 후 한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한국 밖에서 생산 가공 또는 공정이 수행되었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 생산 가공 또는 공정은 부속서 2가-나에 따라 양 당사국이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2절 원산지 절차

제2가.22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영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
 - 나.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자가 작성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신고서, 또는
 - 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신고서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가 다음과 같도록 규정한다.
 - 가. 규정된 형식을 따를 필요는 없다.
 - 나. 전자적 형식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된다.
 - 다. 관련 상품이 식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상품을 기술하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첨부되거나 기재된다.

라. 부속서 2가-다에 규정된 정보 요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마. 영어로 작성된다.

3. 각 당사국은 원산지 신고서가 다음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하나 이상의 상품의 단일 선적의 수입, 또는

나.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기간으로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동일 상품의 복수 선적의 수입

4.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적절한 경우 그리고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에게 상품이 이 장의 요건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날 후 2년 동안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더 긴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규정한다.

6.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2가의 의미 내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제15부부터 제21부까지에 해당하는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품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 그러한 상품에 대한 단일 원산지 신고서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규정한 요건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제2가.23조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근거

1. 각 당사국은 상품의 수입자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에 근거하여(제2가.22조제1항가호에 따름) 또는 수입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에 근거하여(제2가.22조제1항나호에 따름)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

증하는 서류를 수입자가 보유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그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그 서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밖의 인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제공되었을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생산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신고하는 경우, 그 생산자가 당사국 내에 소재하도록 그리고 원산지 신고서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정보를 그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작성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출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신고하고 그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는 당사국 내에 소재하도록 그리고 원산지 신고서가 다음을 근거로 작성되도록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정보를 수출자가 보유하고 있음, 또는

나.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정보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2가.24조

원산지 신고서 및 수입자의 인지 요건의 면제

1. 제2가.22조 및 제2가.23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는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가. 수입의 관세가격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 영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1천 파운드

2)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이 명시할 수 있는 그보다 큰 금액, 또는

나. 수입 당사국이 제2가.22조 및 제2가.23조에 규정된 요건을 면제한 상품인 경우

다만, 그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세관에 신고되었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그 세관 신고의 진실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은 수입이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수입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계획되었다고 그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합리적으로 여기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제1항에 언급된 세관 신고의 정확성 및 이 장의 요건의 준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제2가.25조

수입 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및 환급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음을 규정한다.

가. 제3항을 조건으로,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를 사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나. 제2항을 조건으로, 상품이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로 한정하여, 관세 당국은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사후 신청을 인정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초과 납부된 관세를 환급한다.

2. 제1항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부여의 조건으로,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가. 제2가.22조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것, 그리고

나.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서류(신청이 원산지 신고서에 근거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 사본을 포함할 수 있다)를 제출할 것

3.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사후 신청이 수입일부터 1년 내에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더 긴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한다.

제2가.26조

부정확한 특혜관세대우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그 신청의 정확성 또는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였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수입자는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즉시 정정하고,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통보하며, 부담해야 할 관세 및 적용 가능한 경우 부담해야 할 벌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당국이 특혜관세대우 신청과 관련된 벌금의 부과를 고려할 때,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오류를 정정하고 부담해야 할 모든 관세를 납부한 경우로 한정하여, 그 오류가 당사국에 의하여 발견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통보를 중요한 감경 사유로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제2가.27조

사소한 오류 및 불일치

1. 당사국은 서류 간의 경미한 불일치, 정보의 누락 또는 오타와 같은 사소한 오류 또는 불일치를 이유로 원산지 신고서를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소한 오류 또는 불일치가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당국이 그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한 원산지 신고서가 판독 불가하거나 표면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입자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

국에 정정된 원산지 신고서의 사본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 당국의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받도록 규정한다.

제2가.28조

벌칙

각 당사국은 이 장의 규정과 관련된 자국의 법과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형사상,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벌칙을 부과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2가.29조

기록 유지 요건

1. 각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또는 수입 당사국이 명시하는 더 긴 기간 동안, 다음을 보관하고 요청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이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도록 규정한다.

가.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원산지 신고서를 포함하여, 수입과 관련된 서류, 그리고

나. 그 신청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에 근거한 경우, 그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

2. 각 당사국은 원산지 신고서를 제공하는 그 당사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또는 수출 당사국이 명시하는 더 긴 기간 동안,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제공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여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로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2가.30조

원산지 검증

1.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제2가.22조제1항가호에 따른 수입자의 인지에 근거하거나, 제2가.22조제1항나호에 따라 수입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에 근거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그 상품의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를 요청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2.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제2가.22조제1항다호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에 근거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그 상품의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를 요청하여 그 신청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3.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2항에 따라 획득된 정보가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서면으로 정보를 요청한다.

4.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제3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그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특정 서류를 포함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이러한 요청의 접수에 대한 서면 확인을 그 요청일부터 45일의 기간 내에 또는 양 당사국 간 결정될 수 있는 다른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공한다.

5. 제3항에 따른 요청 후,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그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제2가.29조제2항에 언급된 기록을 요청하는 것

나. 그 상품의 원산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에게 질문하는 것, 또는

다. 제2가.29조제2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거나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

을 시찰하거나 그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검증하기 위한 증거를 달리 수집하기 위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

6.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에 따른 요청을 접수한 후 10개월 내에,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다음을 제공한다.

가. 제4항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요청한 특정 서류를 포함한 모든 정보

나. 원산지 기준에 따라 2단위, 4단위 또는 6단위 형식의 품목분류를 포함한 검사 대상 상품에 대한 설명

다. 생산 공정에 대한 설명

라. 제5항다호에 따라 상품에 대한 모든 검사가 수행된 방식에 대한 정보, 그리고

마. 적절한 경우, 증명서류

7. 이 조에 따른 검증은 특혜관세대우 신청이 이루어진 후 언제든지 수행될 수 있다.

8.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른 검증이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이 장에 따라 수입자가 제공한 서류의 진정성, 관련 생산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장의 그 밖의 요건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되도록 규정한다.

9. 검증 동안, 수입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대로 관세의 납부 또는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상품의 반출을 허용한다. 수입 당사국이 검증의 결과로 상품이 이 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수입 당사국은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하고 초과 납부된 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한다. 다만, 그 담보가 그 밖의 의무에도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 가. 검증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그리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최초의 정보 요청 또는 그 밖의 조치 후 365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당사국은 관련 기술 정보가 복잡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365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그 결정의 근거를 포함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 다. 검증 동안 정보를 제공하거나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 생산자 또는 관세 당국에 검증의 결정 및 그 결정의 이유를 제공한다.

11.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업무량 예측 및 우선순위 논의를 포함하여, 검증 절차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협력한다. 처리하기 어려운 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운영 요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업무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12.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이 조에 언급된 활동을 수행할 때 자국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2가.31조

특혜관세대우 신청에 대한 결정

1. 제2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개정의정서의 발효일에 또는 발효일 후 그 당사국에 도착하거나 그 당사국의 세관 통제로부터 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이 장에 따라 이루어진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인정한다.

2.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나. 제2가.30조에 따른 검증에 더하여, 다음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수령하

지 못한 경우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또는

2)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장의 요건을 준수했는지

다.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제2가.30조에 따른 서면 정보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라.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3. 수입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결정에 대한 사유를 포함하여 그 결정을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4. 당사국은 제2가.22조제2항다호에 언급된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 송장이 비당사국에서 발행되는 경우, 당사국은 원산지 신고서가 그 송장과 분리되도록 요구한다.

제2가.32조

비밀유지 및 정보 보호

1.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수집된 비밀정보가, 그 비밀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사국의 허가 없이 원산지 결정 또는 그 밖의 관세 사안의 운영 및 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수령하거나 획득한 당사국이 자국의 법에 의하여 원산지 결정 또는 그 밖의 관세 사안의 운영 및 집행 외의 목적으로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공개에 앞서 그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사국에 이를 통지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이 장에 따라 수집된 정보가 이 장을 이행하는 관세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시작된 행정적,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이러한 사용에 앞서 그 정보를 제공한 인 또는 당사국에 이를 통지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이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전에 관한 이전 당사국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전에 관한 자국의 규칙을 존중하면서, 개인정보의 이전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5. 각 당사국은 모든 개인정보의 침해를 예방하고 처리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이 장에 따른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 손실, 개인정보 침해 또는 그 밖의 보안 사고는 침해가 발생한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6.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국 내에서 심각한 또는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한 경우(그러한 결함으로 인하여 관련 적정성 결정이 적용되지 않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전에 관한 자국의 규칙에 따라 개인정보의 교환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결함이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이 만족할 정도로 시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교환에 대한 정지는 해제될 수 있다.

제2가.33조

이 장의 개정

무역위원회는 이 장의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2가.34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이 협정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하고, 개정의정서의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국의 세관보관창고나 자유지역에 임시 보관 중인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개정의정서의

발효일부터 12개월 내에, 그 상품이 제2가.20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부속서 2가-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절
일반 주해**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 가. 부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부를 말한다.
 - 나.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류를 말한다.
 - 다.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 라.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2. 특정 류,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집합은 그 류, 호 또는 소호에 인접한 제2열에 규정된다. 제1열의 류 또는 호가 “ex”로 시작되면, 이는 그 규정이 고유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함께 별도로 열거된 호 또는 소호를 제외하고, 그 류 또는 호의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상품이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규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상품이 선택규정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이다.
4. 부 또는 류의 주는 적용 가능한 경우 부 또는 류의 시작 부분에 위치하고,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연계하여 해석되며,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추가 조건을 부과하거나 선택규정을 규정할 수 있다.
5.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특정 재료를 제외하는 경우, 그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되기 위하여 그 제외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여

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제외된 비원산지 재료는 제2가.13조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허용치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

6. 규정이 “모든 호로부터의 생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호의 비원산지 재료(상품과 동일한 품목명 및 호의 재료까지도)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 규정에 또한 포함될 수 있는 모든 특정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7.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 다음에 “집적법”, “공제법” 또는 “원산지재료법”이 뒤따르는 경우, 그 역내가치포함비율 백분율의 계산은 각 경우에 맞게, 제2가.4조에 정의된 집적법, 공제법 또는 원산지재료법으로 제한된다.

8. 이 부속서의 제2절의 목적상,

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2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나.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6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라.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란 집적법, 공제법 또는 원산지재료법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이 제2열에 명시된 백분율 이상의 제2가.4조에 따라 계산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가져야 함을 말한다.

마. **공제법**이란 상품이 제2가.4조에 따라 공제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바. **집적법**이란 상품이 제2가.4조에 따라 집적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사. **원산지재료법**이란 상품이 제2가.4조에 따라 원산지재료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아. **상품의 가격**이란 제2가.6조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자. **공정 기준**이란 상품에 적용 가능한 부의 주에 언급된 모든 공정을 말한다.

9. 이 부속서는 2022년 1월 1일에 발효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년판(이하 “HS 2022” 라 한다)에 기초한다.

제2절
품목별 원산지 규정 목록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류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제2류	사용된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제3류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제4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류	사용된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제2부(제6류-제14류) 주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한 농산물 또는 원예상품은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씨앗, 인경, 근경, 대목, 삽수, 접지, 접목, 싹, 봉오리 또는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의 일부로부터 재배한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이다.	
제6류	사용된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제7류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07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07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0713	4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8류	사용된 제8류와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08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0813	4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9류	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0901	모든 호로부터의 생산
0902.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0902.20	모든 호로부터의 생산
0902.30	모든 호로부터의 생산
0902.40	모든 호로부터의 생산
0906.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0910.91	모든 호로부터의 생산
0910.99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수기 또는 잘게 부수기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10류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제11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12류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1208.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13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1.20	사용된 제1301호의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의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1302.19	모든 호로부터의 생산(소호 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1302.39	모든 호로부터의 생산
제14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15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15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07.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정제
150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09.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1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정제
1512.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정제
1512.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13.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정제
1513.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14.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정제
1514.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정제
1515.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정제
1515.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정제
1515.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정제
1515.5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정제
1515.6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정제
151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정제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1516.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정제
1516.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17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18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21.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정제
152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1522	4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16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20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ex 제17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17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18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18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18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19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31	4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32	6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40	4단위 세번변경기준
190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20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90	6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21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2103.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30	4단위 세번변경기준
2103.9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2104	6단위 세번변경기준
21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2106	6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22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22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2203	모든 호로부터의 생산
ex 제23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23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24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2401	사용된 제2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제25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26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제27류 주 주 1. 화학반응 규정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그 화학반응의 생산물인 제27류의 상품은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규정의 목적상, 화학반응 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은 화학반응이 아니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주 2. 증류 규정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압 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을 거치는 제27류의 상품은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이 규정의 목적상, 가. 상압증류법이란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된 후 그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을 말한다. 상압증류법으로 생산된 상품은 액화석유가스, 나프타, 휘발유, 등유, 디젤, 난방유, 경유 및 윤활유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나. 감압증류법이란 대기압보다 낮지만 분자증류법으로 분류될 정도로 낮지는 않은 압력에서의 증류를 말한다. 감압증류법은 경질·중질 감압경유 및 잔사유를 생산하는 석유의 중질 증류액과 같이, 끓는점이 높고 열에 민감한 물질의 증류에 사용된다. 일부 정유공장에서, 경유는 윤활유로 추가 가공될 수 있다.	
ex 제27류	모든 호로부터의 생산 또는 공정 기준
271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또는 공정 기준
제6부(제28류-제38류) 주 주 1. 화학반응 규정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그 화학반응의 생산물인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의 상품은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규정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은 화학반응이 아니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주 2. 정제 규정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정제의 생산물인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의 상품은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규정의 목적상, 정제란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정제를 말한다. 가. 기존 불순물 양의 80퍼센트가 제거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상품의 정제, 또는 나. 다음의 용도 중 하나 이상에 적합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1) 의약품,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및 시약 3) 초소형 전자공학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4) 특수 광학용 5) 생명공학용(예를 들어, 세포 배양, 유전 공학 또는 촉매)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6)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7) 핵등급용	
주 3. 혼합 및 배합 규정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의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혼합 및 배합이 발생한 경우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규정의 목적상, 혼합 및 배합이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및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으로 희석제의 첨가는 제외되며,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주 4. 입자 크기의 변화 규정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의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입자 크기의 변화를 거치는 경우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규정의 목적상, 입자 크기의 변화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 크기 변형(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 및 다음을 가지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가. 정의된 입자 크기 나. 정의된 입자 크기 분포, 또는 다. 결과물의 목적과 관련된 정해진 표면적 주 5. 표준 물질 규정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의 표준 물질은 그러한 상품의 생산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규정의 목적상, 표준물질이란 제조자에 의하여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 검정 또는 참조용에 적합한 조제품(용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주 6. 이성체 분리 규정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의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성체의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주 7. 생명공학 공정 규정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의 상품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명공학 공정이 그러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경우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규정의 목적상, 생명공학 공정이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생명공학 공정을 말한다. 가. 다음의 생물학적 또는 생명공학적 배양, 교배 또는 유전적 변형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1) 미생물[세균과 바이러스 {파지(phage) 포함} 을 포함한다], 또는 2) 인간, 동물 또는 식물 세포 나. 세포 구조 또는 세포 내 구조(예를 들어 분리된 유전자, 유전자 단편 및 플라스미드)의 생산, 분리 또는 정제, 또는 다. 발효 제3824.99호와 제3826호에 대한 추가 공정 기준 바이오디젤은 트랜스에스테르화, 에스테르화 또는 수소화처리를 통하여 획득된다.	
제28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또는 공정 기준
제29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또는 공정 기준
제30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또는 공정 기준
제31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또는 공정 기준
제32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또는 공정 기준
ex 제33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또는 공정 기준
3302.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또는 공정 기준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34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또는 공정 기준
ex 제35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또는 공정 기준
35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또는 공정 기준
제36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또는 공정 기준
제37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또는 공정 기준
제38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또는 공정 기준
제7부(제39류-제40류) 주 주 1. 화학반응 규정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그 화학반응의 생산물인 제39류 또는 제40류의 상품은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규정의 목적상, 화학반응 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은 화학반응이 아니다.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주 2. 정제 규정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정제의 생산물인 제39류 또는 제40류의 상품은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규정의 목적상, 정제란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정제를 말한다. 가. 기존 불순물 양의 80퍼센트가 제거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상품의 정제, 또는 나. 다음의 용도 중 하나 이상에 적합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1) 의약품,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및 시약 3) 초소형 전자공학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4) 특수 광학용 5) 생명공학용(예를 들어, 세포 배양, 유전 공학 또는 촉매) 6)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7) 핵등급용 주 3. 혼합 및 배합 규정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9류 또는 제40류의 상품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혼합 및 배합이 발생한 경우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규정의 목적상, 혼합 및 배합이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및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으로 희석제의 첨가는 제외되며, 그 결과 투입 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주 4. 입자 크기의 변화 규정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9류 또는 제40류의 상품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입자 크기의 변화를 거치는 경우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규정의 목적상, 입자 크기의 변화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 크기 변형(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 및 다음을 가지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가. 정의된 입자 크기 나. 정의된 입자 크기 분포, 또는 다. 결과물의 목적과 관련된 정해진 표면적 주 5. 표준 물질 규정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9류 또는 제40류의 표준 물질은 그러한 상품의 생산이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규정의 목적상, 표준물질이란 제조자에 의하여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 검정 또는 참조용에 적합한 조제품(용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주 6. 이성체 분리 규정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9류 또는 제40류의 상품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성체의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주 7. 생명공학 공정 규정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9류 또는 제40류의 상품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명공학 공정이 그러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경우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규정의 목적상, 생명공학 공정이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생명공학 공정을 말한다. 가. 다음의 생물학적 또는 생명공학적 배양, 교배 또는 유전적 변형 1) 미생물[세균과 바이러스 {파지(phage) 포함} 을 포함한다], 또는 2) 인간, 동물 또는 식물 세포 나. 세포 구조 또는 세포 내 구조(예를 들어 분리된 유전자, 유전자 단편 및 플라스미드)의 생산, 분리 또는 정제, 또는 다. 발효	
제39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또는 공정 기준
ex 제40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또는 공정 기준
4012.11 – 4012.19	1. 고무로 만든 재생 공기타이어, 솔리드 또는 쿠션타이어: 중고 타이어의 재생 2. 그 밖의 모든 상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또는 공정 기준
ex 제41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4101 – 4103	2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41	6단위 세번변경기준
4104.49	6단위 세번변경기준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4105.30	6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22	6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32	6단위 세번변경기준
4106.92	6단위 세번변경기준
41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제42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제43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제44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45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46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4602.11 - 4602.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47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ex 제48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481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49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제11부(제50류-제63류) 주	
주 1. 유럽연합 누적 규정	
1. 제2가.2조에도 불구하고, HS 2022 제5111호, 제5112호, 제5515호, 제5602호, 제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5603호, 제5607호, 제5703호, 제5705호, 제5903호, 제5907호, 제5911호, 제6201호, 제6202호, 제6203호, 제6204호, 제6205호, 제6206호, 제6210호, 제6211호, 제6212호, 제6302호, 제6304호 및 제6307호에 분류된 상품(이하 이 부속서에서 “관련된 섬유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유럽연합에서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춘 상품 또는 재료는 그 후 당사국에서 관련된 섬유 제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여겨진다. 그리고 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유럽연합에서 수행된 가공은 그 비원산지 재료가 그 후 당사국에서 관련된 섬유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당사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 중 어떠한 경우든, 당사국에서의 관련된 섬유 제품의 생산이 제2가.5조의 최소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가호의 목적상, 유럽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는 다음에서의 적용 가능한 원산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가. 영국에서 생산된 관련된 섬유 제품에 대하여, 2020년 12월 30일에 브뤼셀과 런던에서 서명된 영국과 유럽연합 및 유럽 원자력 공동체 간의 무역협력협정, 또는 나.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관련된 섬유 제품에 대하여, 2010년 10월 6일에 브뤼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⁴ 3. ‘유럽연합’이라는 용어는 세우타 및 멜리야를 포함하지 않는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이 장의 목적상 유럽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주 2. 천연섬유라는 용어는 재생이나 반합성 또는 합성 섬유 외의 섬유를 지칭하기 위하여 목록에서 사용된다. 이는 웨이스트를 포함하여 방적 처리되기 이전 단계로 한정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카드, 코움 또는 달리 가공되었으나 방적되지 않은 섬유를 포함한다. 주 3. 천연섬유라는 용어는 제0503호의 말의 털, 제5002호와 제5003호의 견 및 제5101호부터 제5105호까지의 양모섬유와 동물의 부드러운 털 또는 거친 털, 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의 면섬유, 그리고 제5301호부터 제5305호까지의 그 밖의 식물성 섬유를 포함한다. 주 4. 방직용 펄프, 화학 재료 및 제지 원료라는 용어는 재생이나 반합성, 합성, 또는 종이 섬유나 사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되지 않은 재료를 기술하기 위

⁴ 개정의정서의 발효 후 효력이 발생하는, 그 개정 및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후속 또는 승계 합의를 포함한다.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하여 목록에서 사용된다.	
주 5. 인조스테이플섬유라는 용어는 제5501호부터 제5507호까지의 합성 또는 재생이나 반합성 필라멘트 토우, 스테이플 섬유 또는 웨이스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목록에서 사용된다.	
ex 제50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5001 – 5002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ex 제51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5106 – 5108	4단위 세번변경기준
5109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110	4단위 세번변경기준
5111 ⁵	1. 고무사를 넣은 것: 단사로부터의 생산 2.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 작업. 다만, 사용된 날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치가 상품의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5112 ⁶	1. 고무사를 넣은 것: 단사로부터의 생산

⁵ 유럽연합 누적에 관한 제11부의 주 1 참조.

⁶ 유럽연합 누적에 관한 제11부의 주 1 참조.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2.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 작업. 다만, 사용된 날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치가 상품의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5113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
ex 제52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
5201 - 5203	2단위 세번변경기준
521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ex 제53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5301 - 5303	2단위 세번변경기준
5305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54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5401.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5407 - 5408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7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의 것은 제외한다)
ex 제55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5402호, 제5404호의 것은 제외한다)
5508 - 5511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402호, 제5404호, 제5501호, 제5503호, 소호 제5505.10호, 제5506호, 제5509호, 소호 제5511.10호, 소호 제55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55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5513 - 5514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 소호 제5511.10호, 소호 제55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5515 ⁷	1. 고무사를 넣은 것: 단사로부터의 생산 2.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종이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 작업. 다만, 사용된 날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치가 상품의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5516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509호, 소호 제5511.10호, 소호 제55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ex 제56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1호, 제5503호, 소호 제5505.10호, 제5506호, 제5509호, 소호 제5511.10호, 소호 제5511.20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602 ⁸	1. 니들룸 펠트: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그러나 - 제5402호의 비원산지 폴리프로필렌필라멘트 - 제5503호 또는 제5506호의 비원산지 폴리프로필렌 섬유, 또는

⁷ 유럽연합 누적에 관한 제11부의 주 1 참조.

⁸ 유럽연합 누적에 관한 제11부의 주 1 참조.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 제5501호의 비원산지 폴리프로필렌필라멘트 토우의 경우, 단일 필라멘트나 섬유가 9데시텍스 미만인 모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음. 다만, 그 총가치는 상품의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천연섬유 － 카세인으로 만든 인조스테이플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5603 ⁹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5607 ¹⁰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또는 － 제지 원료
ex 제57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소호 제5511.10호, 소호 제5511.20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는 제외한다)
5703 ¹¹	1. 니들룸 펠트의 것: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그러나 － 제5402호의 비원산지 폴리프로필렌필라멘트 － 제5503호 또는 제5506호의 비원산지 폴리프로필렌 섬유, 또는 － 제5501호의 비원산지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토우 의 경우, 단일 필라멘트나 섬유가 9데시텍스 미만인 모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음. 다만, 그 총가치는 상품의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⁹ 유럽연합 누적에 관한 제11부의 주 1 참조.

¹⁰ 유럽연합 누적에 관한 제11부의 주 1 참조.

¹¹ 유럽연합 누적에 관한 제11부의 주 1 참조.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함.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용될 수 있음. 2. 그 밖의 펠트의 것: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3.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코이어사 또는 황마사 - 합성필라멘트사 또는 재생이나 반합성 필라멘트사 - 천연섬유, 또는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용될 수 있음.
5704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 소호 제5511.10호, 소호 제5511.20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705 ¹²	1. 니들룸 펠트의 것: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그러나 - 제5402호의 비원산지 폴리프로필렌필라멘트 - 제5503호 또는 제5506호의 비원산지 폴리프로필렌 섬유, 또는 - 제5501호의 비원산지 폴리프로필렌필라멘트 토우 의 경우, 단일 필라멘트나 섬유가 9데시텍스 미만인 모든 종류가 사용될 수 있음. 다만, 그 총가치는 상품의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용될 수 있음. 2. 그 밖의 펠트의 것: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¹² 유럽연합 누적에 관한 제11부의 주 1 참조.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3.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코이어사 또는 황마사 - 합성필라멘트사 또는 재생이나 반합성 필라멘트사 - 천연섬유, 또는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황마 직물은 안감으로 사용될 수 있음.
ex 제58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 소호 제5511.10호, 소호 제5511.20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8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ex 제59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 소호 제5511.10호, 소호 제5511.20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5903 ¹³	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 작업. 다만, 사용된 날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치가 그 상품의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5906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5907 ¹⁴	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

¹³ 유럽연합 누적에 관한 제11부의 주 1 참조.

¹⁴ 유럽연합 누적에 관한 제11부의 주 1 참조.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날염 작업. 다만, 사용된 날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치가 그 상품의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5911 ¹⁵	1. 제5911호의 펠트의 것이 아닌 폴리싱 디스크 또는 링: 사 또는 제6310호의 웨이스트 직물 또는 념마로부터의 생산 2. 직물(제지 또는 그 밖의 공업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펠트된 것과 아닌 것을 포함하며, 침투 또는 도포 여부를 불문하고, 단일 또는 복합 경사 및/또는 위사를 사용한 관 또는 엔드리스(endless) 모양, 또는 제5911호의 복합 경사 및/또는 위사를 사용한 평직물로 한정한다):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코이어사 - 다음의 재료 --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의 사 -- 사(폐놀수지로 도포, 침투 또는 피복된 폴리아미드의 복합사로 한정한다) -- 사(방향족 폴리아미드의 합성방직섬유제의 것으로, 메타 페닐렌디아민 및 이소프탈산의 축합중합에 의하여 획득된 것으로 한정한다) --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의 모노필 -- 합성방직섬유제의 사[폴리(과라-페닐렌 테레프탈아마이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 유리섬유의 사(폐놀 수지로 도포하고 아크릴사로 침투된 것으로 한정한다) -- 폴리에스테르의 코폴리에스테르 모노필라멘트와 테레프탈산, 1,4-시클로헥산디에탄올산 및 이소프탈산의 수지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처리 준비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3. 기타: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처리 준비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¹⁵ 유럽연합 누적에 관한 제11부의 주 1 참조.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제60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402호, 제5404호,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9호, 소호 제5511.10호, 소호 제55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제61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 제5408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
ex 제62류 ¹⁶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직조 또는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자수.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치가 상품의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또는 제조(절단을 포함한다)를 동반하는 도포. 다만, 사용된 도포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치가 상품의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며 날염이 선행되는 제조. 다만, 사용된 날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치가 상품의 가격의 4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6207 - 6209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 제5408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
6213 - 6217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 제5408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
ex 제63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 제5408호,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60류의 것은 제외한다)
6302 ¹⁷	1. 펄트의 것과 부직포의 것: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¹⁶ 유럽연합 누적에 관한 제11부의 주 1 참조.

¹⁷ 유럽연합 누적에 관한 제11부의 주 1 참조.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2. 기타: - 자수한 것 표백하지 않은 단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자수되지 않은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은 제외)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치가 상품의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기타 표백하지 않은 단사로부터의 생산
6304 ¹⁸	1. 펠트의 것과 부직포의 것: 다음으로부터의 생산 - 천연섬유, 또는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2. 기타: - 자수한 것 표백하지 않은 단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자수되지 않은 직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은 제외)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치가 상품의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기타 표백하지 않은 단사로부터의 생산
6307 ¹⁹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의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63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64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65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제66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제67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¹⁸ 유럽연합 누적에 관한 제11부의 주 1 참조.

¹⁹ 유럽연합 누적에 관한 제11부의 주 1 참조.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ex 제68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68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6812	6단위 세번변경기준
681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제69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70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7009.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7019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ex 제71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7101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7102 - 7104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7106.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7106.91	1. 가공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106호, 제7108호, 제7110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의 전해, 열 또는 화학적 분리, 또는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의 상호 간, 또는 비금속과 의 융합이나 합금, 또는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정제 2.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7106.92	6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11	6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12	1. 가공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106호, 제7108호, 제7110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의 전해, 열 또는 화학적 분리, 또는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의 상호 간, 또는 비금속과의 융합이나 합금, 또는 정제 2.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13	6단위 세번변경기준
7108.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11	1. 가공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106호, 제7108호, 제7110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의 전해, 열 또는 화학적 분리, 또는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의 상호 간, 또는 비금속과의 융합이나 합금, 또는 정제 2.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19	6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21	1. 가공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106호, 제7108호, 제7110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의 전해, 열 또는 화학적 분리, 또는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의 상호 간, 또는 비금속과의 융합 또는 합금, 또는 정제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2.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29	6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31	1. 가공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106호, 제7108호, 제7110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의 전체, 열 또는 화학적 분리, 또는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의 상호 간, 또는 비금속과의 융합이나 합금, 또는 정제 2.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39	6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41	1. 가공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106호, 제7108호, 제7110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의 전체, 열 또는 화학적 분리, 또는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의 상호 간, 또는 비금속과의 융합이나 합금, 또는 정제 2.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7110.49	6단위 세번변경기준
ex 제72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7208 - 7216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08호부터 제7217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7219 - 7222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19호부터 제7223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25 - 7228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25호부터 제7229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제73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제74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제75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ex 제76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76.01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비합금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열 또는 전해 처리
ex 제78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7801.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7804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제79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제80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제81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ex 제82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207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211 - 821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214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ex 제83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301 - 8302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305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ex 제84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01.4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0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0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0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0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0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07 - 84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10.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11.91 - 8411.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1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13.91 - 8413.9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1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1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1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17.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18.91 - 8418.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19.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20.91 - 8420.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21.91 - 8421.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2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2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2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25 - 843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3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3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3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3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36.91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36.99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37.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3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39.91 - 8439.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40.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4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42.4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43.91 - 8443.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44 - 844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48.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48.31 - 8448.5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4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8450.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5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5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5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5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5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56 – 846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67.91 – 8467.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6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70 – 847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7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7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7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77.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7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79.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8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8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82.9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82.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8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8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8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48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ex 제85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01 - 850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0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0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0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07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원산지재료법) 또는 셀 생산
8508.7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09.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10.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1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1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1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1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1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1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17.71 - 8517.7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1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1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21 - 852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30.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3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3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3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34 - 8538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39.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40.91 - 8540.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4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4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4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54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ex 제86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608 - 860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ex 제87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8701 - 87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원산지재료법)
8703	역내가치포함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원산지재료법)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8704 - 870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원산지재료법)
8708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제88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제89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ex 제90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01 - 90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0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0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06.91 - 9006.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07.91 - 9007.9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0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9010.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1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1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13.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1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1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1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17.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19 - 90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2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2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2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24.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25.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26.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27.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28.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29.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30.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31.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32.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033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ex 제91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111 - 9113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제92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ex 제93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9305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305 - 9307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ex 제94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401.1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원산지재료법)
9401.2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원산지재료법)
9401.31 - 9401.80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원산지재료법)
9401.91 - 9401.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5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원산지재료법)
940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403.91 - 9403.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404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9405.91 - 9405.99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HS 2022	품목별 원산지 규정
9406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제95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제96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일 것(공제법/집적법)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원산지재료법)
제97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부속서 2가-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1. 한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양 당사국의 약속,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남북한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제15.1조(무역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무역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역외가공지역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 경제개발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2. 무역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확인하고, 그러한 역외가공지역이 양 당사국이 합의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 내에서 원산지 최종 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한다.

부속서 2가-다
최소 정보 요소

제2가.22조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의 요소를 포함한다.

1.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서명자가 제2가.22조에 따른 수입자인지, 수출자인지 또는 생산자인지 여부를 표시한다.

2. 서명자

서명자의 이름, 회사명(적용 가능한 경우), 주소(우편번호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3. 수출자

서명자와 다른 경우, 수출자의 이름, 주소(우편번호 및 국가 포함),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영국 수출자의 경우, 영국 수출자 참조번호가 부여된 경우 이를 기재한다. 수출자의 주소는 수출 당사국 내에 있어야 한다. 생산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출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이 정보는 요구되지 않는다.

4. 생산자

서명자 또는 수출자와 다른 경우, 생산자의 이름, 주소(우편번호 및 국가 포함),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또는 복수의 생산자가 있는 경우, “다수” 라고 기재하고 생산자 목록을 기재한다. 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인은 “수입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제공 가능” 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주소는 당사국 내 그 상품의 생산지여야 한다.

5. 수입자

알려진 경우, 수입자의 이름, 주소(우편번호 및 국가 포함),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수입자의 주소는 당사국 내에 있어야 한다.

6. 상품의 품명 및 HS 세번

가. 상품의 품명 및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세번을 6단위까지 기재한다. 품명은 원산지 신고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과 연계하기에 충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원산지 신고서가 상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되는 경우, 알려진 경우 수출과 관련된 송장 번호를 기재한다.

7. 원산지 기준 및 관련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상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규정을 명시한다.

8. 복수 선적 기간

원산지 신고서가 제2가.22조제3항에 규정된 대로 최대 12개월까지의 특정 기간 동안 동일 상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되는 경우, 그 선적이 이루어질 기간을 기재한다.

9. 서명 및 날짜

원산지 신고서는 서명자에 의하여 서명되고 날짜가 기재되며, 다음 문구를 수반한다.

본인(수입자/수출자/생산자)은 이 문서에 기술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으며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함을 신고합니다. 본인(수입자/수출자/생산자)은 이러한 진술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며, 이 원산지 신고서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유지하고 요청에 따라 제공하거나, 검증 방문 동안 이를 이용 가능하게 할 것에 동의합니다.”